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에 대한 평정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에 대한 평정자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정함(안 제3조제1항 별표)
-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관이 아니더라도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에 대한 평정을 실시함(안 제3조제3항)

4.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평정자가 법관이 아닌 경우에는”을 “평정자가 법관이 아닌 경우(윤리감사관은 제외)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평정자)</p> <p>① ~ ② (생략)</p> <p>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u>평정자가 법관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u></p> <p>④ (생략)</p>	<p>제3조(평정자)</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u>평정자가 법관이 아닌 경우(윤리감사관은 제외)에는 제1항의 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별표]

근무성적 등 평정자

평 정 대 상 자	평 정 자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사법지원실장·사법정책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지원장	소속 고등법원장
각급 법원 근무 판사(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지원장 제외)	소속 법원장 또는 소속 지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경우)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비서실 판사·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포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사법지원실장·사법정책실장 제외) 및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정대상이 되는 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 근무 판사	법원도서관장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 근무 판사 연구위원 및 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장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	윤리감사관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제외)	수석재판연구관
소속 법원을 달리하는 겸임(직무대리 포함)판사 또는 소속 법원장이 2인 이상인 판사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경우)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677